



# PART

---

---

---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제4절 평가

##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 제1장

## 언론조정

## 제1절 개요

##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각 중재부는 독립적 입장에서 조정 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양 당사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 및 조화로운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최근 3년간은 4,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0년 이후로는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70% 중반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됐는데, 특히 2024년에는 80.9%, 2025년에는 81.3%로 연속 80%를 넘겨 인터넷 기반 미디어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채널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 대상 매체에 포함하여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을 상시 처리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조정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쇼츠 영상에 고정댓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사가 아닌 자(개인 등)가 제공한 유튜브 등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 대상 매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전년 대비 89건(2.3%)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구분 \ 연도	2023	2024	2025
청구 건수	4,085	3,937	4,026

### 2 청구권별 현황

2025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839건(45.7%), 손해배상청구 1,403건(34.8%), 반론보도청구 690건(17.1%), 추후보도청구 94건(2.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3. 1. 1.~2025. 12. 31.)

청구명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정정보도		1,943 (47.6)	1,824 (46.3)	1,839 (45.7)
반론보도		731 (17.9)	825 (21.0)	690 (17.1)	2,246 (18.6)
추후보도		99 (2.4)	57 (1.4)	94 (2.3)	250 (2.1)
손해배상		1,312 (32.1)	1,231 (31.3)	1,403 (34.8)	3,946 (32.8)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579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51건(11.2%), 방송 331건(8.2%), 신문 311건(7.8%), 뉴스통신 242건(6.0%)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23. 1. 1.~2025. 12. 31.)

매체 유형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신문	일간 신문	388 (9.5)	287 (7.3)	208 (5.2)
주간 신문		99 (2.4)	89 (2.3)	103 (2.6)	291 (2.4)
방송		345 (8.4)	317 (8.1)	331 (8.2)	993 (8.2)

매체 유형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잡지	8 (0.2)	10 (0.3)	6 (0.1)	24 (0.2)
뉴스통신	218 (5.3)	176 (4.5)	242 (6.0)	636 (5.3)
인터넷신문	2,491 (61.0)	2,537 (64.4)	2,579 (64.1)	7,607 (63.1)
인터넷뉴스 서비스	498 (12.2)	473 (12.0)	451 (11.2)	1,422 (11.8)
기타	38 (0.9)	48 (1.2)	106 (2.6)	192 (1.6)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기타' 항목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5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3,857건(95.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94건(2.3%), 초상권 침해 41건(1.0%), 재산상 손해 31건(0.8%), 성명권 침해 3건(0.1%)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침해 유형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명예훼손	4,042 (98.9)	3,810 (96.8)	3,857 (95.8)	11,709 (97.2)
초상권 침해	21 (0.5)	85 (2.2)	41 (1.0)	147 (1.2)
음성권 침해	1 (0.0)	6 (0.2)		7 (0.1)

침해 유형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성명권 침해	3 (0.1)	3 (0.1)	3 (0.1)	9 (0.1)
사생활 침해	3 (0.1)	1 (0.0)	94 (2.3)	98 (0.8)
재산상 손해	4 (0.1)	4 (0.1)	31 (0.8)	39 (0.3)
기타	11 (0.3)	28 (0.7)		39 (0.3)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5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253건(5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단체 759건(18.9%), 기업체 501건(12.4%), 지자체 167건(4.1%), 공공단체 93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일반단체, 지자체,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개인, 기업체, 공공단체 등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신청인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개인	2,225 (54.5)	2,154 (54.7)	2,253 (56.0)	6,632 (55.0)
국가기관	77 (1.9)	76 (1.9)	51 (1.3)	204 (1.7)
지자체	154 (3.8)	181 (4.6)	167 (4.1)	502 (4.2)
공공단체	101 (2.5)	54 (1.4)	93 (2.3)	248 (2.1)

신청인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일반단체	536 (13.1)	819 (20.8)	759 (18.9)	2,114 (17.5)
종교단체	46 (1.1)	19 (0.5)	72 (1.8)	137 (1.1)
기업체	757 (18.5)	456 (11.6)	501 (12.4)	1,714 (14.2)
언론사	141 (3.5)	47 (1.2)	51 (1.3)	239 (2.0)
교육기관	48 (1.2)	131 (3.3)	79 (2.0)	258 (2.1)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5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4,026건 중 서울중재부(8개)가 2,954건(73.4%), 지역중재부(10개)가 1,072건(26.6%)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222건(5.5%), 대전중재부 196건(4.9%), 대구중재부 166건(4.1%), 광주중재부 159건(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서울을 제외한 지역중재부 가운데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중재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에 소재하는 언론사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3. 1. 1. ~ 2025. 12. 31.)

중재부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서울중재부	3,114 (76.2)	2,923 (74.2)	2,954 (73.4)	8,991 (74.6)
부산중재부	23 (0.6)	69 (1.8)	53 (1.3)	145 (1.2)

중재부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대구중재부	123 (3.0)	126 (3.2)	166 (4.1)	415 (3.4)
광주중재부	117 (2.9)	111 (2.8)	159 (3.9)	387 (3.2)
대전중재부	67 (1.6)	82 (2.1)	196 (4.9)	345 (2.9)
경기중재부	357 (8.7)	226 (5.7)	222 (5.5)	805 (6.7)
강원중재부	33 (0.8)	38 (1.0)	39 (1.0)	110 (0.9)
충북중재부	82 (2.0)	101 (2.6)	57 (1.4)	240 (2.0)
전북중재부	98 (2.4)	158 (4.0)	68 (1.7)	324 (2.7)
경남중재부	58 (1.4)	61 (1.5)	98 (2.4)	217 (1.8)
제주중재부	13 (0.3)	42 (1.1)	14 (0.3)	69 (0.6)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3,052건(7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건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2025년에는 884건(22.0%)이었고, 우편 56건(1.4%), 방문 34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3년 96.4%, 2024년 95.2%, 2025년 9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3		46	97	1,123	5	2,814	4,085
		(1.1)	(2.4)	(27.5)	(0.1)	(68.9)	(100.0)
2024		115	53	721	22	3,026	3,937
		(2.9)	(1.3)	(18.3)	(0.6)	(76.9)	(100.0)
2025		34	56	884	-	3,052	4,026
		(0.8)	(1.4)	(22.0)		(75.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 1 개요

2025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653건(41.1%), 취하 1,051건(26.1%), 조정불성립결정 870건(21.6%), 기각 298건(7.4%), 각하 72건(1.8%), 직권조정결정 73건(1.8%)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이 4.2%p, 조정불성립결정된 사건의 비율이 5.1%p 상승한 반면, 피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은 5.3%p, 직권조정결정된 사건의 사건의 비율은 2.1%p 감소했다. 기각 및 각하 사건은 전년과 비슷하게 9% 가량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3	4,085	1,599	61	34	793	145	113	1,152	188		74.1%
	%	(40.6)	(1.5)	(0.9)	(20.1)	(3.7)	(2.9)	(29.3)	(4.8)		
2024	3,937	1,452	88	66	649	336	38	1,028	280		72.5%
	%	(36.9)	(2.2)	(1.7)	(16.5)	(8.5)	(1.0)	(26.1)	(7.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5	4,026	1,653	40	33	870 (19)	298	72	838	213	9	69.9%
	%	(41.1)	(1.0)	(0.8)	(21.6)	(7.4)	(1.8)	(20.8)	(5.3)	(0.2)	

\*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이송)} × 100

## 2 피해구제율 현황

2025년 피해구제율은 69.9%로 전년의 72.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조정성립 비율이 소폭 오른 데 비해 조정불성립결정 및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의 비율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피해구제율은 전체 사건에서 기각, 각하 또는 이송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3. 1. 1.~2025.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3		4,085	258	3,827	2,835	74.1%
2024		3,937	374	3,563	2,582	72.5%
2025		4,026	370	3,647	2,550	69.9%

\* 2025. 8. 사건 이송 절차 개편에 따라 2025년 청구요건 적합건수(A-B)에 이송사건 수 제외

### 3 청구권별 처리결과

#### 가. 개요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성립률은 각각 43.6%, 49.4%로 전년과 비교해 대폭 상승하였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전년에 비해 대폭 낮아졌으나, 조정신청 후 심리가 열리기 전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따라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60.6%로 나타나 실제로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조정성립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상승하여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궁극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분석된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정정보도	1,839 (100.0)	802 (43.6)	37 (2.0)	424 (23.1)	145 (7.9)	20 (1.1)	316 (17.2)	89 (4.8)	6 (0.3)
반론보도	690 (100.0)	341 (49.4)	15 (2.0)	128 (18.6)	56 (8.1)	4 (0.6)	110 (15.9)	35 (5.1)	1 (0.1)
추후보도	94 (100.0)	6 (6.4)		7 (7.4)	1 (1.1)	4 (4.3)	57 (60.6)	19 (20.2)	
손해배상	1,403 (100.0)	504 (35.9)	21 (1.5)	311 (22.2)	96 (6.8)	44 (3.1)	355 (25.3)	70 (5.0)	2 (0.1)
계	4,026 (100.0)	1,653 (41.1)	71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 1. 정정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무원인 신청인이 근무시간에 ‘폭탄주’를 마셨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연근무제가 적용돼 해당 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였으므로 근무시간 중 음주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2. 반론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자체장인 신청인이 특정 지역에 투자목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패널 발언을 방송했다. 신청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실제 거주 이력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게시된 다시보기 영상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3. 추후보도

피신청인은 해군인 신청인이 배가 고장났다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죄 확정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사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 사례 4.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법인이 일부 언론에 공지한 행사의 세부 일정과 신청인 소속 구성원들의 성명, 휴대폰번호를 기사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인과 구성원들이 내부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연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① 처리현황

2025년 손해배상청구 1,403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504건(35.9%), 직권조정결정 21건(1.5%), 조정불성립결정 311건(21.0%), 기각 96건(6.8%), 각하 44건(3.1%), 취하 425건(30.3%)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된 사건의 비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직권조정결정으로 피해구제된 사건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에 비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각하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4배 정도 증가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3. 1. 1. ~ 2025.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1] (0.8)	270[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2024	1,231 (100.0)	421 (34.2)	23 (1.9)	20 (1.6)	223[6]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2025	1,403 (100.0)	504 (35.9)	12 (0.9)	9 (0.6)	311[8] (21.0)	96 (6.8)	44 (3.1)	355 (25.3)	70 (5.0)	2 (0.1)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 사건 1,403건 중 실제 금전배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32건(2.3%)으로 전년도 22건(1.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배상을 포함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수정 및 열람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구제된 조정사건 수는 879건(62.7%)이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중 금전배상 비율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조정건수	비율(%)
2023	1,312	28	2.1
2024	1,231	22	1.8
2025	1,403	32	2.3

## ② 청구액 및 조정액

2025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90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2천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5년 손해배상 조정건수는 전년도 22건에서 32건으로 증가했다. 조정 최저액은 3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았으나, 조정 최고액은 2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배 증가했으며, 평균 조정액 또한 전년도 145만 원에서 205만 9,375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손해배상 최고 조정액은 2천만 원이었다. 지역번영회와 지역번영회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지역번영회가 광역 철도 조기착공 추진위 활동을 정치적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고, 지역번영회 대표자는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조정대상기사의 수정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되었다.

**사례 5. 손해배상 최고 조정액 사례**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과 신청인 단체가 광역 철도 조기착공 추진위 활동을 정치적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고, 신청인 단체 대표자는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신청인 단체 대표자 관련 사건이 경찰의 기소외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이며,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중재부는 기사 수정과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3. 1. 1.~2025. 12. 31./ 단위: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2024		1	220,000,000,000	620,578,012	20,000,000
2025		1	9,000,000,000	75,415,441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3. 1. 1.~2025. 12. 31./ 단위: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2024		300,000	5,000,000	1,450,000	1,000,000
2025		300,000	20,000,000	2,059,375	1,000,000

**㉓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5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54건(89.4%)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생활 침해 90건(6.4%), 초상권 침해 30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254건 중 21건(1.7%)만이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사생활 침

해 등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보다 다소 높은 비율인 전체 149건 중 7.4%(11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62.7%)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의료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 보도에서 피신청인은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화물차 사진을 게재하였고, 조정대상기사에 언급된 화물차 차주인 신청인은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알림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5. 1. 1. ~ 2025. 12. 31./ 단위: 원)

침해 유형 \ 조정액	인용건수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1건	300,000	20,000,000	2,219,048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4건	1,000,000	5,000,000	2,125,000	1,25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1건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재산상 손해	4건	800,000	5,000,000	1,700,000	650,000	500,000
사생활 침해	2건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사례 6.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행사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사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명예훼손성 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7.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동물학대 사건 보도 중 재연을 위해 촬영한 신청인의 매장 외관을 방영하면서 '재연' 표시를 누락하였고, 신청인은 이로 인해 동물학대 사건과 신청인의 매장이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시청자들이 신청인을 사건 관계자로 오인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인정되어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승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254 (100.0)	484 (38.6)	21 (1.7)	297 (23.7)	96 (7.7)	22 (1.8)	267 (21.3)	65 (5.2)	2 (0.2)
초상권 침해	30 (100.0)	11 (36.7)		10 (33.3)		1 (3.3)	3 (10.0)	5 (16.7)	
성명권 침해	3 (100.0)	1 (33.3)		1 (33.3)			1 (33.3)		
사생활 침해	90 (100.0)	3 (3.3)		1 (1.1)		2 (2.2)	84 (93.3)		
재산상 손해	26 (100.0)	5 (19.2)		2 (7.7)		19 (73.1)			
계	1,403 (100.0)	504 (35.9)	21 (1.5)	311 (22.2)	96 (7.7)	44 (3.1)	355 (25.3)	70 (5.0)	2 (0.1)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일간신문(46.2%), 방송(51.4%), 주간신문(54.4%) 등 오프라인 매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한편,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신문(23.8%), 인터넷뉴스서비스(18.8%)는 전년과 유사하게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오프라인 매체보다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뉴스통신의 경우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의 비율(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들이 온라인 매체 보도에 대해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고, 온라인 매체의 피신청인들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등 위원회를 통해 사전에도 활발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매체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승
									구제	미구제	
신문	일간 신문	208 (100.0)	96 (46.2)	3 (1.4)	71 (34.1)	10 (4.8)		15 (7.2)	13 (6.3)		
	주간 신문	103 (100.0)	56 (54.4)	5 (4.9)	22 (21.4)		2 (1.9)	14 (13.6)	4 (3.9)		
방송		331 (100.0)	170 (51.4)	4 (1.2)	90 (27.2)	23 (6.9)	6 (1.8)	21 (6.3)	17 (5.1)		
잡지		6 (100.0)	4 (66.7)		1 (16.7)	1 (16.7)					
뉴스통신		242 (100.0)	91 (37.6)	3 (1.2)	38 (15.7)	22 (9.1)	3 (1.2)	75 (31.0)	10 (4.1)		
인터넷신문		2,579 (100.0)	983 (38.1)	46 (1.8)	523 (20.3)	204 (7.9)	56 (2.2)	615 (23.8)	143 (5.5)	9 (0.3)	
인터넷뉴스 서비스		451 (100.0)	209 (46.3)	3 (0.7)	99 (22.0)	31 (6.9)	4 (0.9)	85 (18.8)	20 (4.4)		
기타		106 (100.0)	44 (41.5)	9 (8.5)	26 (24.5)	7 (6.6)	1 (0.9)	13 (12.3)	6 (5.7)		
계		4,026 (100.0)	1,653 (41.1)	73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기타' 항목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지난해 접수된 사건 4,026건 중 대다수가 명예훼손 사건(3,857건, 95.8%)이었다. 이 외에도 사생활 침해 94건(2.3%), 초상권 침해 41건(1.0%), 재산상 손해 31건(0.8%), 성명권 침해 3건(0.1%) 순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명예훼손 사건의 전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률은 42.1%(1,625

건)이며, 조정절차 중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 19.4%(749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은 61.6%(2,3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 외 처리결과로는 조정불성립결정 22.1%(852건) 기각 7.6%(295건), 미구제 취하 5.3%(205건), 직권조정결정 1.9%(73건), 각하 1.3%(49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정불성립결정(22.1%)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19.4%) 비율은 작년(25.8%)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조정 전 당사자 간 사전 합의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7.6%)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8.2%) 대비 감소하였으나, 신청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건의 비율(1.3%)은 전년(0.9%)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사생활 침해와 재산상 손해 관련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침해는 2.3%(94건)를 차지해 명예훼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1건) 대비 청구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처리결과 측면에서 조정성립 사건 6.4%(6건), 심리절차 중 취하로 구제된 사건이 89.4%(84건)로 조정 전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해결된 경우가 다수였다. 재산상 손해는 0.8%(31건)로 전년도 4건에 비해 청구 건이 증가하였다. 이 중 다수의 사건이 조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61.3%(19건)로 종결되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은 1.0%(41건)로 전년도 2.2%(85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9%(16건), 조정절차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취하 9.8%(4건)로 집계되었는데, 전년도에 조정성립 9.4%(8건)보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42.4%(36건)로 높았던 것에 비해 2025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침해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857 (100.0)	1,625 (42.1)	73 (1.9)	852 (22.1)	295 (7.6)	49 (1.3)	749 (19.4)	205 (5.3)	9 (0.2)
초상권 침해	41 (100.0)	16 (39.0)		12 (29.3)		1 (2.4)	4 (9.8)	8 (19.5)	
성명권 침해	3 (100.0)	1 (33.3)		1 (33.3)			1 (33.3)		
사생활 침해	94 (100.0)	6 (6.4)		1 (1.1)		3 (3.2)	84 (89.4)		

침해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재산상 손해	31 (100.0)	5 (16.1)		4 (12.9)	3 (9.7)	19 (61.3)			
계	4,026 (100.0)	1,653 (41.1)	73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 8. 명예훼손

피신청인 언론사는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유력 증거를 신청인의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 및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9. 초상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소속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과 무관한 보도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보도 이후 비식별처리 등을 하였고, 심리에서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10. 성명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공익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성명이 포함된 고발장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원 노출로 업계 내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피신청인의 부주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11. 사생활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연예인과 연예인 소속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대행사 대표의 개인 전화번호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전 피신청인은 기사 열람차단 및 사과문 게재 조치를 하였고 심리 결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심리 전 조치를 유지하고,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재산상 손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러브버그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일 년 전 촬영된 신청인의 가게 영상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의 음식점에 위생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사를 열람차단한 상태였고, 심리에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023년 54.5%, 2024년 54.7%, 2025년 56.0%로 계속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개인 청구 사건 2,253건 중 791건(35.1%)이 조정성립되었고, 582건(25.8%)이 열람차단 및 보도기재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으며, 502건(22.3%)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 건수는 개인사업자, 기타, 교육자, 정치인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률은 연예인(75%), 조합대표 및 협회장(57.1%), 정치인(54.8%), 문화예술인(38.3%)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지자체(62.3%), 국가기관(60.8%), 일반단체와 교육기관(각 5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5. 1. 1.~2025. 12. 31.)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이송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치인	250 (100.0)	137 (54.8)	6 (2.4)	54 (21.6)	12 (4.8)	6 (2.4)	27 (10.8)	8 (3.2)	
공공기관장	10 (100.0)			8 (80.0)			2 (20.0)		
고위공무원	74 (100.0)	23 (31.1)		28 (37.8)			7 (9.5)	16 (21.6)	
공무원	205 (100.0)	71 (34.6)		60 (29.3)			48 (23.4)	26 (12.7)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이송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전문직 종사자	190 (100.0)	79 (41.6)	4 (2.1)	26 (13.7)	56 (29.5)	2 (1.1)	17 (8.9)	6 (3.2)	
문화예술인	81 (100.0)	31 (38.3)	3 (3.7)	15 (18.5)		2 (2.5)	22 (27.2)	8 (9.9)	
종교인	66 (100.0)	10 (15.2)	2 (3.0)	19 (28.8)			30 (45.5)	5 (7.6)	
회사원	81 (100.0)	29 (35.8)		17 (21.0)			26 (32.1)	7 (8.6)	2 (2.5)
언론인	23 (100.0)	5 (21.7)		10 (43.5)			2 (8.7)	6 (26.1)	
교육자	323 (100.0)	106 (32.8)	3 (0.9)	92 (28.5)	24 (7.4)		93 (28.8)	5 (1.5)	
개인사업가	396 (100.0)	129 (32.6)	5 (1.3)	78 (19.7)	17 (4.3)	7 (1.8)	141 (35.6)	19 (4.8)	
연예인	12 (100.0)	9 (75.0)					3 (25.0)		
학생	90 (100.0)	14 (15.6)		15 (16.7)		3 (3.3)	55 (61.1)	3 (3.3)	
시민활동가	24 (100.0)	6 (25.0)		14 (58.3)	4 (16.7)				
조합대표 및 협회장	42 (100.0)	24 (57.1)	5 (11.9)	10 (23.8)			3 (7.1)		
기타	386 (100.0)	118 (30.6)	6 (1.6)	56 (14.5)	61 (15.8)	30 (7.8)	106 (27.5)	9 (2.3)	
계	2,253 (100.0)	791 (35.1)	34 (1.5)	502 (22.3)	174 (7.7)	50 (2.2)	582 (25.8)	118 (5.2)	2 (0.1)

\* ( ) 안의 숫자는 %

\*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5. 1. 1. ~ 2025. 12. 31.)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승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51 (100.0)	31 (60.8)	2 (3.9)	8 (15.7)	2 (3.9)		4 (7.8)	4 (7.8)	
지자체	168 (100.0)	105 (62.3)	2 (1.2)	24 (14.4)	1 (0.6)		24 (14.4)	12 (7.2)	
공공단체	93 (100.0)	33 (35.5)		31 (33.3)			17 (18.3)	10 (10.8)	2 (2.2)
일반단체	759 (100.0)	423 (55.7)	11 (1.4)	115 (15.2)	98 (12.9)	15 (2.0)	68 (9.0)	29 (3.8)	
종교단체	72 (100.0)	26 (36.1)	14 (19.4)	14 (19.4)	1 (1.4)	1 (1.4)	16 (22.2)		
기업체	501 (100.0)	185 (36.9)	8 (1.6)	144 (28.7)	19 (3.8)	6 (1.2)	111 (22.2)	23 (4.6)	5 (1.0)
언론사	51 (100.0)	16 (31.4)		20 (39.2)			7 (13.7)	8 (15.7)	
교육기관	79 (100.0)	44 (55.7)	2 (2.5)	12 (15.2)	3 (3.8)		9 (11.4)	9 (11.4)	
계	1,773 (100.0)	862 (48.6)	39 (2.2)	368 (20.8)	124 (7.0)	22 (1.2)	256 (14.4)	95 (5.4)	7 (0.4)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3.4%(2,954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023년 76.2%(3,114건), 2024년 74.2%(2,923건)로 꾸준히 70% 중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1.2%(1,217건), 당사자 간 협의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해구제된 것이 21.5%(634건), 조정불성립결정 20.6%(6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8.0%(235건), 미구제 취하 5.0%(147건), 각하 2.1%(63건), 직권조정결정 1.4%(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6.6%, 1,072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이 40.7%(43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불성립결정 24.3%(261건),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19.0%(2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미구제 취하 6.2%(66건), 기각 6.0%(63건), 직권조정결정 3.1%(33건)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서울	2,954 (100.0)	1,217 (41.2)	40 (1.4)	609 (20.6)	235 (8.0)	63 (2.1)	634 (21.5)	147 (5.0)	9 (0.3)
부산	53 (100.0)	24 (45.3)	3 (5.7)		2 (3.8)	1 (1.9)	21 (39.6)	2 (3.8)	
대구	166 (100.0)	77 (46.4)	6 (3.6)	46 (27.7)		2 (1.2)	29 (17.5)	6 (3.6)	
광주	159 (100.0)	127 (79.9)	9 (5.7)	8 (5.0)	2 (1.3)	5 (3.1)	7 (4.4)	1 (0.6)	
대전	196 (100.0)	51 (26.0)		71 (36.2)	27 (13.8)		23 (11.7)	24 (12.2)	
경기	222 (100.0)	68 (30.6)		61 (27.5)	10 (4.5)		74 (33.3)	9 (4.1)	
강원	39 (100.0)	6 (15.4)	4 (10.3)	8 (20.5)	2 (5.1)	1 (2.6)	18 (46.2)		
충북	57 (100.0)	9 (15.8)	8 (14.0)	14 (24.6)	16 (28.1)		10 (17.5)		
전북	68 (100.0)	24 (35.3)	3 (4.4)	37 (54.4)	2 (2.9)			2 (2.9)	
경남	98 (100.0)	40 (40.8)		14 (14.3)	2 (2.0)		20 (20.4)	22 (22.4)	
제주	14 (100.0)	10 (71.4)		2 (14.3)			2 (14.3)		
계	4,026 (100.0)	1,653 (41.1)	73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로 뉴스 이용자의 뉴스 소비 형태 또한 기성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산·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 매체 범위의 한계로 동영상 플랫폼 기반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도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2022년 ‘조정 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대상을 좀 더 넓게 포섭하려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콘텐츠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유튜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법제화 방안을 청취하였는바, 이로써 변화된 뉴스 소비 구조 속에서 유튜브 기반 콘텐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한편 위원회가 언론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의 91.5%, 피신청인의 8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양 당사자 모두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특히 피신청인의 찬성률이 전년도 대비 10% 가까이 올라서 언론사들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방송사가 보도 영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도 전재하는 것 외에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위원회에 접수된 4,026건 중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신청이 287건(7.13%) 있었고, 이 중 원보도를 매개한 건이 244건, 자체 제작한 건이 43건이었다. 2024년 대비 동영상 플랫폼 대상 신청 건이 21건 증가하였으며, 자체 제작 보도에 대한 신청이 2023년 28건, 2024년 33건, 2025년 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원보도 매개 외에 자체 제작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다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피해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뉴스 플랫폼에 대한 조정사례를 축적·관리하여 향후 이들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사례 13.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①**

피신청인 언론사에서 모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이 원장 사망 후 일방적으로 폐업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원장의 유족들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반론보도문을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추가하면서 병원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 제목을 수정하고, 타 영상들과 내용은 중복되면서 제목이 자극적으로 쓰인 쇼츠 영상은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사례 14.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②**

피신청인 언론사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 유명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는데, 유명인의 옆에 나란히 걸어서 나오던 신청인이 언론사 및 해당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신청인이 나온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 중 쇼츠를 포함한 2개 유튜브 동영상의 블러 처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어 언론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제4절 평가

2025년 위원회는 총 4,026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전년 3,937건과 비교하면 사건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피해구제율은 69.9%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9.9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8.0점으로 전년 대비 신청인 0.2점, 피신청인 0.1점이 각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피신청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심리 전후 절차 안내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심리 전 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83.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당사자들의 조정절차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3년 연속하여 4천 건 내외를 기록하였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수가 많을뿐더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특성상 유사한 보도가 다수 매체로 확산하는 일이 빈번하여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다량 신청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각 중재부에서는 대표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다른 사건 처리에도 참고토록 하거나 쟁점이 동일한 경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해 같은 시간대에 병행 심리를 개최하는 등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정신청 사건 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중재부가 추가로 증설되지 않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 21.5일이었던 조정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에는 25.7일로 늘어났고,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28.7일로 파악되어 처리기간의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사건 수 증가 외에 당사자의 심리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속행, 송달 불능 및 거부, 심리 전 취하 기피 경향 등 다

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중재법은 법정처리기한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중재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당사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재부 증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위원회는 유튜브 등 뉴스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소위원회에서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조정 대상 확대 입법을 위해 조정사례를 축적, 관리해오고 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이나 최상단 고정댓글로 보도문을 게재하는 방식 외에도 일부 영상 수정, 자막 추가나 모자이크 처리 강화 등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에도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피해구제범위 확장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정을 대비한 실무 논의 및 내실을 다진 자료 축적에 힘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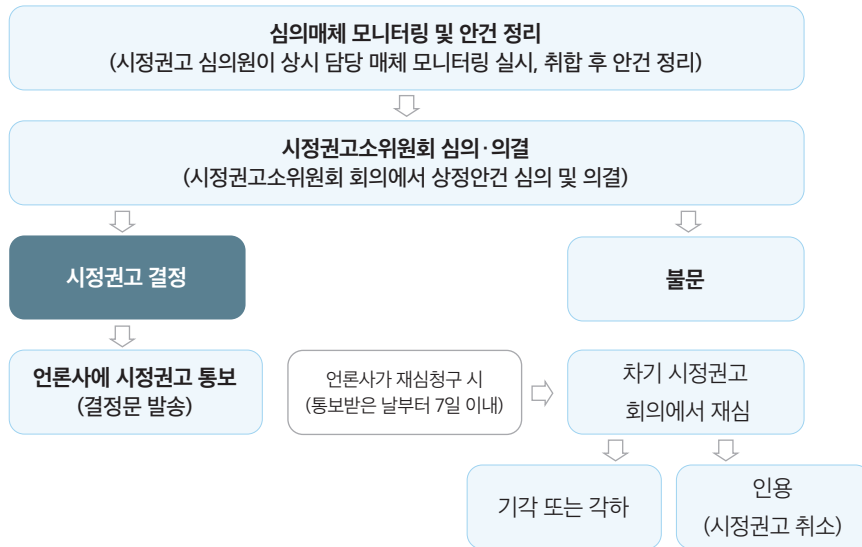
## 제2장

## 시정권고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신문·잡지·인터넷신문·뉴스통신·방송 등의 언론 보도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지를 심의·의결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 시정권고 절차흐름도



심의의 결과로 법익 침해가 확인되면,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시정권고 대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①법

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이행을 강제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시정권고 현황

2025년 위원회는 상반기 2,714개, 하반기 2,655개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였고, 455개 매체를 대상으로 1,049건의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의 내용은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각 회의 의결 현황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5년에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 중 동일 법익을 3회 이상 침해한 매체는 상반기 12개, 하반기 16개였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반복 침해된 심의기준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5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40건(2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살 보도' 239건(22.8%)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생활 보호 등' 182건(17.3%), '기사형 광고' 135건(12.9%), '범죄 사건 보도' 50건(4.8%), '신고자 등 보호' 50건(4.8%)도 주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상위 5개 침해 유형은 2024년과 거의 일치하나, 2025년에는 '신고자 등 보호'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침해 유형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3. 1. 1. ~ 2025. 12. 31.)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연도	계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2024	942 (100)	131 (13.9)		62 (6.6)	1 (0.1)	8 (0.8)	47 (5.0)		241 (25.6)		7 (0.7)	4 (0.4)	226 (24)	4 (0.4)		17 (1.8)		161 (17.1)	33 (3.5)	
2025	1,049 (100)	182 (17.3)	27 (2.6)	50 (4.8)		1 (0.1)	50 (4.8)	2 (0.2)	240 (22.9)	19 (1.8)	30 (2.9)		239 (22.8)	1 (0.1)	16 (1.5)	19 (1.8)		135 (12.9)	38 (3.6)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5년 한 해 동안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이 적용된 시정권고는 총 182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며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사생활, 통신 내역 등을 과도하게 공표한 보도, 유명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을 보도하며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혹은 성명을 공표한 보도,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퇴 압박으로 거취를 고심하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머무르는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주거지 내부를 원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 당사자가 고위공직자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영역은 존재하는바, 주거지 내 구체적 사생활 현장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 1. 사생활 보호 등

사회 : 검찰 · 법원

### 하루 종일 '자택 칩거' 노만석 포착 됐다... 고뇌하는 모습 담겨

중앙일보 | 입력 2025.11.12 05:11 업데이트 2025.11.12 09:57

지면보기 ①

김성진 기자 김보름 기자

구독

- 사퇴 압박으로 거취를 고심하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머무르는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제외

## 나. 범죄사건 보도

2025년 '범죄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50건으로, 전체의 4.8%이다. 위원회는 언론이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표한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가족 간 총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 신상을 보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유명 업체명을 공표하여 주위 사람들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보도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게 하는 정보가 사안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 2. 범죄사건 보도

전체 > 사회 **사건/사고**

### [단독]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 ] 대표 일가족이었다

류근원기자 | 입력 2025.07.21 22:22 댓글 1

- 가족 간 총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름)를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및 관련 내용 제외

## 다. 차별금지

2025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240건으로, 전체의 22.9%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질름발이', '빙어리 냉가슴'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의 성별 혹은 집단 차별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표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 3. 차별 금지

#### "중국인 줄 알았다"... 상의 탈의한 채 음식 포장하는 중국집 사장님

김다솜 기자 4,315 2025.08.31 | 11:22:13



-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

## 라. 자살 보도

2025년 '자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239건으로, 전체의 22.8%이다. 위원회는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보도,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표현을 공표한 보도 등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자살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소방관 실종 당시 소재를 파악하려고 가족이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해당 공표를 발견 후의 언론 공표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 보도가 공익적 논의를 촉발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련 논의 자체가 아닌 사인(私人)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사례 4. 자살 보도

실시간 정치 국제 경제 금융 산업 IT·바이오 사회 수도권 지방 문화 스포츠 연예 N컷 광장 포토 TV뉴스스 재류 콘텐츠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타살 혐의점 없어...사건 종결 예정

등록 2025.08.21 11:44:31 | 수정 2025.08.21 15:34:23

가 가

### 검안 결과 극단 선택 추정 흔적도 나와

-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자살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제외

## 마. 재난 보도

2025년 '재난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19건으로, 전체의 1.8%이다. 19건 모두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 보도로, 탑승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공표한 사례와 항공기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을 멈춤 처리 등의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도한 사례가 시정을 권고받았다.

위원회는 탑승자 명단이 있는 해당 사고의 경우 사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재난 상황과 달리 실명을 공표할 만큼 보도 긴급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탑승자 명단을 공개해 둔 기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항공기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원본 그대로 보도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고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보도 관행을 넘어 참사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보도라고 판단했고,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사례 5. 재난 보도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문화 기획 스포츠 여순항쟁 산단 오피니언 사람 포토 영상 카메라 고발

홈 > 뉴스 > 사회

## 무안 여객기 참사 사망자 120명 집계... 사망자 명단 공개

A 조승화 기자 | 입력 2024.12.29 17:27 | 댓글 0

가 가



가족단위 탑승객 많아...연말 해외여행 다녀오다 참변  
정부 중대본 가동... 최상목 대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 항공기 탑승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제외

### 3 매체 유형별 분석

2025년 시정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931건(88.8%)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일간지와 뉴스통신은 각각 67건(6.3%), 48건(4.6%)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의 추세를 집계해 보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의 비율이 꾸준히 90%를 상회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계속해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기반 매체 보도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기반 매체의 보도는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법의 침해의 영향이 커질 특성이 있으나, 동시에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 비식별 처리 등의 사후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도 있다.

이에 위원회는 법의 침해가 확인된 경우 인터넷 기반 매체에 비식별 처리, 기사 수정, 삭제 등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안내하며,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보도의 공유나 재확산이 차단되어 법의 침해의 확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권고 이후 언론사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사례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법의 침해가 인터넷을 매개로 장기간 지속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표 23. 시정권고 수용 사례 안내문 일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사실] 글로벌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b>‘눈먼 돈’</b> 대신 안 돼	[사실] 글로벌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b>‘애먼 돈’</b> 대신 안 돼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b>결정 장애</b> … 경고받고도 진압 지시 안해”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b>우유부단</b> … 경고 받고도 진압지시 안해”
“뭘 먹을래?” “글쎄…” <b>결정 장애</b> 가 우울증 전조증상?	“뭘 먹을래?” “글쎄…” <b>결정에 어려움</b> 느끼는 게 우울증 전조증상?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b>꿀 먹은 병어리</b> 인가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b>묵묵부답</b> 인가

### 4 법의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5년에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모두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매체는 2025년에 시정권고를 받은 전체 매체인 455개 매체의 1% 가량에 불과하지만, 전체 권고 건수의 약 8.9%건(93건)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원회는 법의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3. 1. 1. ~ 2025.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 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2024	942 (100)	29 (3.1)	54 (5.7)	2 (0.2)		63 (6.7)	794 (84.3)	
2025	1,049 (100)	33 (3.1)	34 (3.2)	2 (0.2)	1 (0.1)	48 (4.6)	931 (88.8)	

### 제3절 평가

2025년 위원회는 총 1,049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과 뉴스통신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권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의 시정권고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위원회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한 원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확산하는 파생 기사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터넷을 매개로 추가 확산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사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한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매체에 관련 현황을 송부하고, 2026년에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발송하는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등 보도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언론의 법익 침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2025년 ‘차별 금지’와 ‘자살 보도’ 항목의 침해 유형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위원회가 2024년 이후 차별적 표현과 모방 자살 등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 국적,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과 자살을 미화·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관련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생활 보호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영역,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표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범죄 사건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연 4회의 시정권고 심의원 교육을 실시하여 심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관 기관의 심의 기준 및 관련 사례를 학습하며 주요 심의 기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등 심의에 필요한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심의 환경 변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쟁점 사례 중심의 토론형 교육과 전문 분야별 심화 교육을 확대하여 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심의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존 심의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수용자 인식 조사 및 유사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기준 비교 등으로 시정권고 심의 기준 개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법제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첩된 기준을 일원화하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문언을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되는 판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가 단순한 사후적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이 자율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공적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제3장

## 선거기사심의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 내지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 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체심의'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상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가 있을 경우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의미한다.

'시정요구심의'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 요청을 받아들여 선심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당사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 부터 30일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인과 언론사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가 이를 선심위에 회부하여 진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와 시정요구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한다. 반면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선심위가 당사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통보한다.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를 설치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선으로 안건들을 심의하였다. 참고로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아 선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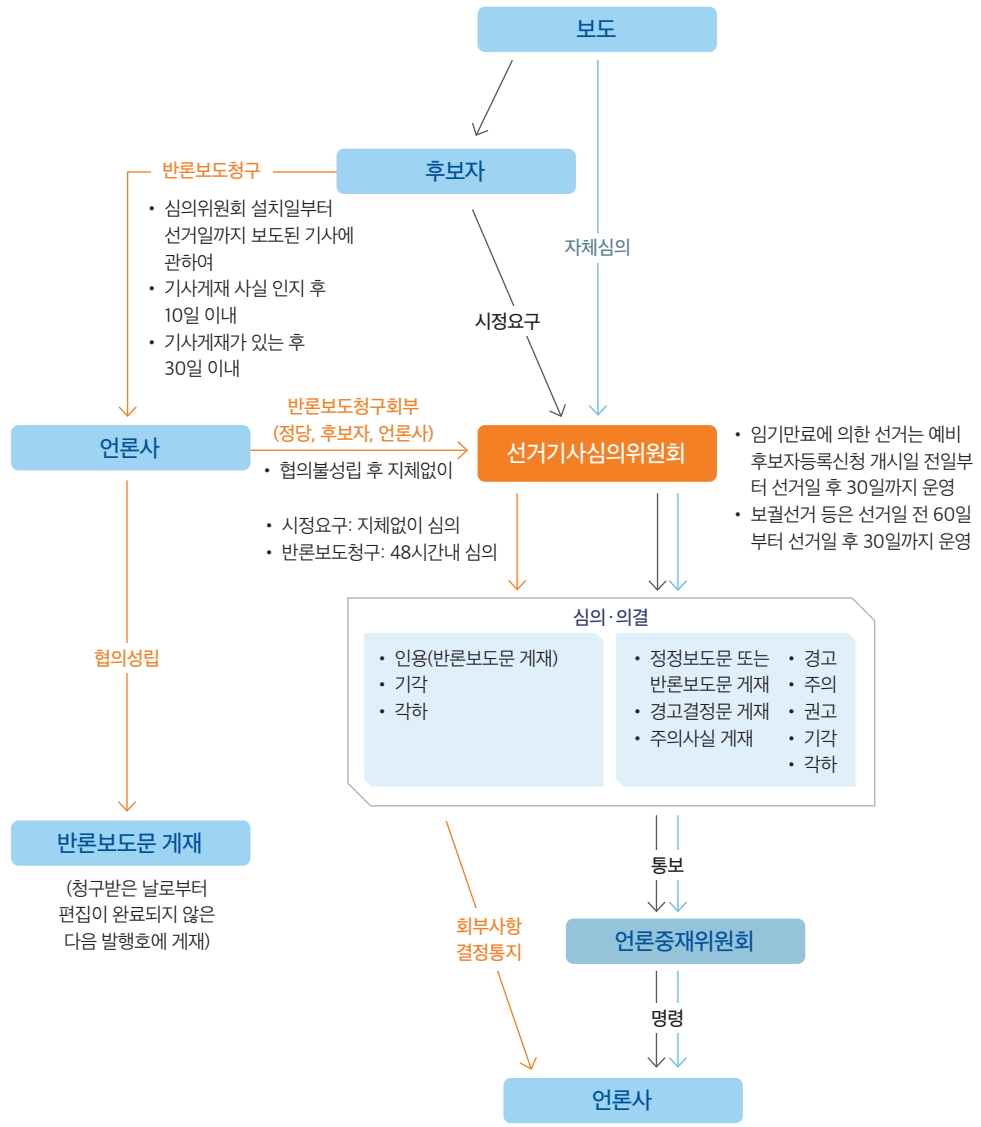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작성된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최초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등 변화된 보도 환경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회 기본규칙, 선심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심의위원 추천단체 선정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선심위 구성의 투명성을 높

였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심위 운영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심의·의결 흐름도

**심의·의결 흐름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는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가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흐름도를 참고



**< 불이행시 >**  
 ※ 처벌조항: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결정사항 불이행 시 「공직선거법」(제25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재심청구 >**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재심 청구는 1회로 제한됨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2025년 4월 2일 실시됨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5.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박홍래	(현)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한기천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국민의힘
	박영흠	(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민호	(현)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성기철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한국신문협회
	정희옥	(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혜진	(현) 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상기 심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겸직함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기초단체장	5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 제6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4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 제12선거구
기초의원	9	서울 중랑구 다선거구, 서울 마포구 사선거구,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 인천 강화군 가선거구, 전남 광양시 다선거구, 전남 담양군 라선거구, 전남 고흥군 나선거구, 경북 고령군 나선거구, 경남 양산시 마선거구
교육감	1	부산광역시

나. 심의의결현황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226개(중앙일간지 30개, 지역일간지 96개, 기타일간지 5개, 중앙주간지 28개, 지역주간지 46개, 중앙월간지 8개, 뉴스통신 13개)의 신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9건을 의결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사실 게재 1건(11.1%), 경고 5건(55.6%), 주의 3건(33.3%)의 결정을 내렸다.

9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보도유형별로는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부각 보도한 일반 선거기사가 6건(66.7%)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터뷰 보도 2건(22.2%),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1건(11.1%)도 있었다. 매체유형별로는 뉴스통신이 4건(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주간지와 지역주간지가 각 2건(22.2%), 지역일간지가 1건(11.1%)이었다.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시정요구심이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제도 없었다.

표 26.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5. 2. 1.~2025. 5. 2.)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1 (11.1)	1			1							1				
중앙 주간지	2 (22.2)	2				2						1	1			
지역 주간지	2 (22.2)	2			1			1				2				
뉴스 통신	4 (44.4)	4			4						1	1	2			
계	9 (100)	9 (100)			6 (66.7)	2 (22.2)		1 (11.1)			1 (11.1)	5 (55.6)	3 (33.3)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출마 소식과 기자회견, 홍보 이미지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했으나, 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아 선거기사의 후보자 간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사례 2.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 특정 예비 후보자의 동향과 공약 등을 담은 특집 기획 기사를 여러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를 결정함

**사례 3.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조덕호 아산시장 예비후보, 26일 개소식 열어..."아산에 새미래 가져올 것"**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      송고 일시 : 2025-02-26 21:45



조덕호 아산시장 예비후보, 26일 개소식(사진제공=조덕호 예비후보)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조덕호 새미래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2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산시 범영로 136(아고 오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새미래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동과 함께 성황리에 개소식을 마쳤다.

조덕호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아산을 찾는 관광객 600만명 유치> 아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23년 395만명 2024년 44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아산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600만명이 아산을 찾을 수 있도록 아산시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정 예비 후보자의 연설문 등 후보자와 관련한 홍보자료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 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함

## 2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4. 선고 2024헌나8)에 따라 2025년 6월 3일에 조기 실시되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기존에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심위 심의위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심의위원을 겸직하게 되었다.

### 나. 심의·의결현황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420개(중앙일간지 31개, 지역일간지 129개, 기타일간지 5개, 중앙주간지 26개, 지역주간지 206개, 중앙월간지 8개, 지역월간지 2개, 뉴스통신 13개)의 신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26건을 의결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고결정문 게재 3건(11.5%), 경고 6건(23.1%), 주의 15건(57.7%), 권고 1건(3.8%), 안내문 송부 1건(3.8%)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별로 보게 되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2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4건(15.4%)이었다. 보도유형별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7건(6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내용 및 편집에서 특정 후보자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부각하거나 편향적으로 보도한 일반선거기사가 4건(15.4%)이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3건(11.5%),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 1건(3.8%),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가 1건(3.8%) 순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6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9건(34.6%), 뉴스통신 1건(3.9%) 순이었다.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시정요구심이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도 없었다.

**표 27.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5. 4. 14. ~ 2025. 7. 3.)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 일간지	9 (34.6)	9					1		8			4	4	1	
지역 일간지	16 (61.5)	12	4		3	1		3	9	2		2	11		1
뉴스 통신	1 (3.9)	1			1					1					
계	26 (100)	22 (84.6)	4 (15.4)		4 (15.4)	1 (3.8)		1 (3.8)	3 (11.5)	17 (65.4)	3 (11.5)	6 (23.1)	15 (57.7)	1 (3.8)	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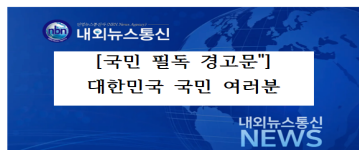
**사례 1.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HOME > 정치 > 정치일반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 편집국 | © 승인 2025.04.27 10:55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재명의 본심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석한 결과,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이재명의 발언과 그 위험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대기업에 리코번 적용해 재산 몰수 추진

법인세 인상, 재벌 해체 선언

지역화폐 의무화, 환전 추가 건설 반대

우역차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반복

▶ 평가: 반기업 반시장적 상황, 산업 기반 붕괴 위험.

**[2. 복지]**

전국민 기본소득, 토지배당 주장

데이터세, AI세,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내외뉴스통신

HOME > 정치 > 정치일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A 편집국 | © 승인 2025.06.04 17:13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본 뉴스통신은 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 자 정치면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 자 오미나연면 『[이영직박사 칼럼] 이남이 밥 먹어준다』)하여 공화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공정성 및 형평성) 제 1항제1호 및 제 2호(일반 선거기사) 제 2호, 제 11호(특정기회 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 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nbnews1@naver.com

편집국 nbnews1@naver.com

저작권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정 예비 후보자의 연설문 등 후보자와 관련한 후보자료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 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함



사례 4.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東亞日報 2023년 04월 11일 19면 (수요일)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홍준표 글

홍준표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책에는 홍준표의 30년 정치 역정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진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책, 철학,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시크로드 출판사  
출판일: 2023년 04월 11일  
판: 18,000원  
세금: 별도  
주문번호: 033-955-6333

東亞日報 2023년 04월 11일 19면 (수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한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령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차) 인천광역시청(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안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73)  
06-29-15-5000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고를 결정함

사례 5.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주의)

2023년 04월 19일 19면 (수요일)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여론조사 맞보기

한동훈 > 김문수 > 안철수  
'반드시' 적격 투표층 82%

국민의힘이 오는 22일까지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을 통해 4명의 2차 진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국민의힘 지명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할 결과가 나왔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에이스넷리서치·리얼미터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8%,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로, 4위권까지 전일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3%, 윤상현 의

원 1%, 그 외 다른 사람 3%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없다'는 48%, '모름/무응답'은 7%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 홍 후보는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23%로 타 후보를 앞섰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각 14%, 19%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홍 후보(17%)와 안 후보(16%)가 엇비슷했다. 40대에서는 한 후보와 안 후보가 9%로 같았다.

지역별 서울(13%), 인천·경기(10%)에서는 홍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17%)에서는 한 후보

가, 광주·전라(10%)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1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16%)과 강원·제주(16%)에서는 홍 후보가 가장 앞섰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2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한동훈 19%,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4%로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인 '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홍준표·한동훈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가 20%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한동훈 12%,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5%였다.

중도층의 경우 한동훈이 12%로 가장 앞섰고, 이어 안철수 10%, 홍준표 8%, 김문수 5%, 나경원 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82%로 나타났다.

이러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2%였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투표층(연령 + 별도)은 6%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74)의 92%, 국민의힘 지지층(n=302)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정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3.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기자  
(23.04.14.11pm)

- 예비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이를 명기하지 않고 예비후보자가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함

## 다. AI를 활용하여 작성된 기사에 최초로 제재 결정

최근 생성형 AI를 일반 대중도 손쉽게 활용하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작성된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AI를 활용하여 산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 최초로 제재 결정을 함으로써 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추어 실효적인 심의를 실시하였다.

사례 6. 기사는 후보자들의 AI 공약과 관련하여 시가 각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도하였다. 선심위는 AI를 활용하여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평가지표나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및 순위·등급을 정하였다는 점, AI 답변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직 후보자들 공약의 비교 평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준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의 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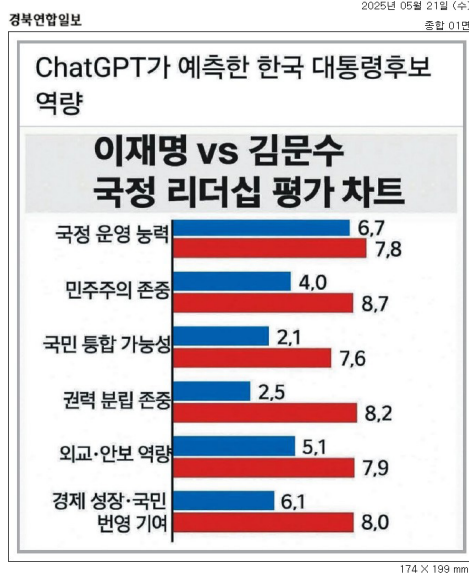
선심위는 차후 AI 활용 보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향후 선심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사례 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주의)



- 후보자들의 AI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점수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였으며,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한

사례 7.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 후보자들의 리더십, 외교 및 안보역량, 경제 성장 기여 등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 평가하면서 평가 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함

**3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로 선심위 구성의 투명성 제고**

위원회는 선심위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단체 의결’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심위 위원의 위촉 절차 전반에 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명확한 선심위 위원 추천단체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기존 규정에서 ‘추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추천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추천단체가 추천하지 않았을 때는 차순위 추천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선심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당사자들이 선심위 결정에 좀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체감하도록 했다.

## 4 선거기사심의제도 관련 시의성 강화 및 유관 기관과 정책 대응

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각종 사례를 유관 기관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평가: 정치 양극화 시대 제21대 대통령선거 인터넷 선거보도 현황과 선거보도 신뢰 회복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해당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오픈소스 생성형 LLM(대규모 언어모델)의 선거보도 심의 실무 활용 가능성 여부를 비롯하여 선심위 활동 중 있었던 '시를 활용하여 작성된 기사'에 대한 제재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하였으며, 반론보도청구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평가> 공동 세미나 참석 모습



위원회 선심위와 유관 기관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도 간담을 진행하여 원활한 실무 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차후 선심위 운영에서도 심의 현황을 신속히 공유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비롯하여 탄핵 정국 등으로 예정보다 이르게 실시되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두 선거의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로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에도 위원회는 기설치된 202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을 충실히 의결하였다.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9건을 의결했는데, 9건 모두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선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국민 여론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만큼 선심위는 매체별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심의하였다. 실제로 총 26건의 안건 심의 중 22건(84.6%)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이었는데, 특이점으로는 보도유형 중 일반선거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건(15.4%)으로 미미하고 의견광고 또는 상업광고에 따른 의결 사례가 17건(65.4%)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비단 기사 형태의 보도문뿐만 아니라 광고 게재에서도 언론사들에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선심위는 그 특성상 선거가 있을 때 선거일 전후로 설치 및 운영되기 때문에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 자체는 기존 여타 선심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추어 시를 활용한 불공정 선거기사 제재 사례를 남기거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차후 선심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정 정비로 선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향후 구성되는 선심위 자체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국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선거인 만큼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수도 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의 사례처럼 신유형의 선거기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효율적이고 기민한 선심위 설치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선거기사심의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실시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심위 제도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강화하고, 선심위가 아닌 일반 조정상담 부서에 선거기사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응대 절차를 정리한 상담 매뉴얼을 상담부서와 지역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